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21146 판결 [유언효력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희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27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11. 접수 제31465호로 마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951 유언의 검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20. 검인한 유언자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11. 접수 제31465호로 마친 각 3/2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7/10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11. 접수 제31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우자 망 E(2013. 11. 26.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와 피고들을 두었고, 2019. 4. 29. 사망하였다.

나. 유언증서의 작성 및 검인

1) 망인은 2013. 12.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유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망인의 이름 옆에는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포괄유증서

성명: D

생년월일: F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G

상기본인은아래와같이포괄유증한다.

1. 본인소유의재산일체(향후취득재산포함)을사후장남원고(주민등록번호3생략)에게유증한다.
2. 위유증의집행자로장남원고를지정한다.

작성일자: 2013. 12. 24.

유증자: D (날인)

2) 원고는 2019. 10. 25.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951호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0. 실시한 유언증서 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 원본을 검인하였다.

3) 위 기일에 원고, 피고들이 출석하였고, 피고들은 ‘유언증서의 필체와 인장이 망인의 것인지 의심스럽고, 망인이 유언증서 작성 당시 치매증세가 있어 유언증서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유언증서 존재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 및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망인 작성의 자필편지 및 망인, 원고,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1) 망인은 2014. 1.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필편지(이하 ‘이 사건 자필편지’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자필편지에 서명을 하였다.

삼형제보아라.

나는아빠가고학을하던시절부터아빠와함께모든고생을했고집안의모든재산들이
루었다. 나는아빠의사후모든문제를법과룰에따라해결할것이니너희삼형제는엄
마, 아빠의뜻을존중하여받아들이고따라주기바란다.

1. G 집은엄마소유로하고우리집안의종가로한다. G 집은장남한테승계한다.
2. 나머지상속재산들은모두엄마와삼형제의상속지분에따라나눈다.
3. 아빠로부터미리받은것은반환하여엄마와삼형제의상속지분에따라똑같이나눈다.
4. 자산은장남(원고)이대표하여관리하고형제들은합심하여엄마의뜻을따르라.

2) 망인, 원고, 피고들은 2014. 1. 8.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 이전 과정

망 E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E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따라 2014. 5. 29. 망인 3/9, 원고와 피고들 각 2/9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11. 접수 제31465호로 망인의 3/9 지분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3/27 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1,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유언 효력 확인 청구

망 E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 사실을 망 E의 사망 이후 알게 된 망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장남인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위 유언증서 작성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고, 위 유언증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개시된 이 사건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 절차에서 위 유언증서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유언증서에 따른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은 원고가 포괄적으로 유증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3/9 지분을 각 3/27 지분씩 상속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인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유언 효력 확인 청구에 대한 주장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자필편지 등을 통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 피고들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해볼 때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증서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작성된 것이거나,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주장

가) 주위적으로, 망인의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유언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3/9 지분 중 각 3/27 지분을 상속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들의 각 3/27 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나) 예비적으로, 망인의 유언이 유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12조 제1호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18 지분(= 망인의 지분 3/9 × 법정상속비율 1/3 × 유류분비율 1/2)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유언증서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대표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② 향후 망인의 상속재산 중 아직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재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도 있으므로, 위 유언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①’ 부분의 분쟁은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위 ‘②’ 부분은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2) 유언집행자로서는,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 절차에서 위 유언증서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유언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을 확인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권판단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피고들 명의로 각 3/2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체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3/27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유언 효력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유언증서에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이름 옆에는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유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법정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위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유언의 유효함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자필편지 및 망인, 원고,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내용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에 배치되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작성된 것이거나,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필편지는 망인이 아닌 망 E의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에 관한 망인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망인, 원고, 피고들이 위 자필편지의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게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이 사건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작성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유언은 유효하고, 위 유언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으므로, 상속재산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도 원고가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들 명의의 각 3/27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유언은 유효하므로, 위 유언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결과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된 경우 유류분의 침해가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인들의 유류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액과 구체적인 상속분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일부인 특정재산 중 상속인들의 유류분비율이 곧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이 곧바로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들 명의의 각 1/18 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3/27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선범, 판사 시용재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 751㎡

2. 위 지상

알시조 평슬래브 지붕 9층 근린생활시설

지층 592.69 ㎡

1층 408.04㎡

2층 414.82㎡

3층 349.88㎡

4층 349.88㎡

5층 349.88㎡

6층 349.88㎡

7층 322.65㎡

8층 294.79㎡

9층 163.08㎡, 같.

별지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인 "E" (서울시 강남구 H (주민등록번호2) 2013. 11. 26. 사망)"의 상속인들은 어머니(D)의 뜻을 존중하여, D (서울시 강남구 H (주민등록번호1) 이하 '갑'이라 한다), 장남 A (서울시 노원구 I 아파트 J 호, (주민등록번호3) 이하 '을'이라 한다), 차남 B (서울시 강남구 K 아파트 L 호, (주민등록번호4) 이하 '병'이라 한다), 삼남 C (서울 강남구 M 아파트 N 호, (주민등록번호5) 이하 '정'이라 한다) 등 4인의 참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다.

아 래

1. 갑, 을, 병, 정은 상속재산 중 은행 예금을 아래와 같이 취득한다.

가. '갑' 35,727,126원(=107,181,377원×3/9)

나. '을', '병', '정' 각 23,818,084원(=107,181,377원×2/9)

상속재산 중 은행 예금

순번	은행	상용명	계좌번호	금액(원)	비고
1	○ 은행	저축예금		42,222,496	
2	○ 은행	저축예금		46,511,809	
3	○ 은행	저축예금		3,851,759	
4	○ 은행	P 증권 1A1		2014. 1. 6. 입금예정	추후 분할
5	○ 은행	Q 증권 1A1		2014. 1. 6. 입금예정	

6	O	은행	저축예금		315,674	
7	O	은행	저축예금		1,781	
8	O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51,500	
9	O	은행	저축예금		100,049	
10	O	은행	저축예금		185	
11	O	은행	저축예금		305	
12	O	은행	저축예금		170	
12	R	은행	S 종합통장 저축예금		3,307,151	수수료
13	R	은행	S 종합통장 저축예금		814,095	-2,000
14	R	은행	저축예금		228,273	
합 계					97,405,247	97,403,274

* 위 상속재산 은행 예금 중 4, 5항의 P 증권 1A1, Q

증권 1A1은 2014. 1. 6. 이후 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한다.

2. 서울시 강남구 H 소재 부동산은 '갑'(D)의 소유로 하고

집안의 종가로 한다. 위 부동산은 직장자준 1인의 승계하여 소유 및 관리하

고 상속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3. 아래 나머지 상속재산들은 '갑', '을', '병', '정'의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나

눈다.

재산의 종류	재산의 표시	비고
	서울시 노원구 T (1717㎡)	
	경기도 용주시 U (74,954㎡)	
	경기도 광주시 V (214㎡)	
	경기도 여주군 W (19,315㎡)	
	경상북도 상주시 X (83,702㎡)	
	경상북도 문경시 Y (674㎡)	
	경상북도 문경시 Z (1133㎡)	

부동산	경상북도 문경시 AA	(747㎡)	
	경상북도 문경시 AB	(3,802㎡)	
	서울시 강남구 H	(건물639.4㎡/대지326㎡)	
	서울시 노원구 AC	(건물3,596㎡/대지751㎡)	
	서울시 중구 AD	AE호(건물 36㎡ 중 18㎡)	건물 1/2지분
	서울시 중구 AF	AB호 (건물36㎡ 중 18㎡/대지3400평중3400분의3)	토지 3/3400지분
콘도	AG	콘도미니엄(43평형)-보통급	
	AH	콘도미니엄(30.78평형) AI 호	
	AJ	콘도미니엄(23평형)	
골프 회원권	AK	주식회사 AL	
		광양가죽골프 회원권 (회원번호 AM)	
	주식회사 AN	회원권 (회원번호 AO)	

* 강원도 태백시 AP, AQ 부동산은 할아버지(AR)

의 장손인 '을'(A (주민등록번호3) 이 상속한다.

* 경기도 양평군 AS 부동산은 아버지(E)의 장남인

'을'(A (주민등록번호3) 이 상속한다.

4.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특별수익은 반환하여 '갑', '을', '병', '정' 4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다.(특별수익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하다) 특별수익으로 인한 가산세 및 상속세는 특별수익자가 각각 부담한다.

특별수익은 향후 상속세 부과 시에 확정하며 반환하는 상속지분은 노원구 AC의 건물 및 대지의 반환자 지분에서 차감하되 상속세 확정당

시의 부동산의 가액 및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지분을 초과할 경우 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 등 제세공과금과 재판 비용은 특별수익자가 부담한다.(특별수익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자의 상속액에 따라 안분 비례하여 부담한다)

‘병’, ‘정’의 각 적금 및 ‘정’의 1억원은 반환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한다.(적금은 ‘병’의, 가입일 2011. 2. 21. AT 은행의, 가입일 2011. 5. 16. 및 가입일 2012. 7. 19. O 은행의 적금과 ‘정’의, 가입일 2011. 2. 12. AT 은행의, 가입일 2011. 5. 11. 및 가입일 2012. 7. 20. O 은행의 적금을 말하며 만기일 2014. 5.까지의 ‘병’, ‘정’의 적금은 만기 금액(상속개시일 이후 불입금 차감)을 반환하고 2015. 7. 19. 및 2015. 7. 20. 적금은 각 해약하여 불입액을 반환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한다. ‘정’의 근외삼촌 AU 을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억원은 즉시 반환하여 분할한다.)

5. 가산은 장남인 ‘을’(A (주민등록번호3) 이 대표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협의하여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2014. 1. 8.

‘갑’ 이 름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을' 이 름 :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병' 이 름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정' 이 름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